제297회 임시회

2011. 01. 27.(목)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01.27.(목)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일자 : 2011년 01월 10일

다. 회부일자 : 2011년 01월 12일

라. 상정일자 : 2011년 01월 21일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구명회)

가. 제안이유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에 따라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이 직속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학생교육문화원 사용료 징수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안 별표 2)

○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별표 5 신설)

○ 수련원 및 야영장 사용료 중 식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단서 신설)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김왕년)

○ 본 조례개정안은 2010. 10. 29.「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에 따라,

-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이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에서 본청 직속기관으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사용료 중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에서 운영하던 시설이 주중동 511-9번지로 통합되어 운영됨에 따라 기존 영동 79번지 시설 사용료를 삭제하고, 현재 사용 중인 주중동 시설·설비의 증가에 따른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 사용료의 산정은 타시·도 문화원 및 학생회관의 사용료를 비교 분석 및 우리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산정한 것으로 생각됨.

○ 다만, [별표 2], [별표 5]의 사용료 산정기준에서 “냉·난방비, 수영장 단체”의 기준을 달리 적용한 것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및 지역교육청 소속 학생회관(이하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이라 한다)”을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 학생회관(이하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27조제2항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식비는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학생교육문화원 사용료 징수금액(제26조 관련)

기관명	사 용 구 분(기준)		징 수 액 (기준 시간내)		비 고
충청북도 학생교육문 화 원	공 연 장		오전	120,000원	○ 기준시간(4시간)을 초과 사용할 때는 매 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사용전 예비사용시간 포함 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토요일, 공휴일에 사용할때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단, 냉·난방은 제외) ○ 피아노 별도 조율시는 사용자 부담 ○ 유·무선마이크 3개 기본 무료 ○ 연습 및 무대장치 설치를 위한 준비시 기준사용료의 50% 징수(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 모든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오후	150,000원	
			야간	180,000원	
	영화음악감상실		오전	30,000원	
			오후	40,000원	
			야간	50,000원	
	전시실 내부(1일)		20,000원		
	전시실 외부(1일)		10,000원		
	부속 설비	피아노(1회공연)	40,000원		
		프로젝터(1회공연)	20,000원		
		DVD녹화(1회공연)	30,000원		
		유선마이크(1개당)	5,000원		
		무선마이크(1개당)	5,000원		
		핀마이크(1개당)	10,000원		
		보면대(1개당)	1,000원		
		드라이아이스(1회공연)	30,000원		
		포그머신(1회공연)	20,000원		
		덧 마 루(1일)	30,000원		
		합 창 대(1일)	30,000원		
		무용매트(1일)	70,000원		
		음향반사판(1회공연)	30,000원		
		기본조명(1시간)	30,000원		
		롱핀(2Kw)(1회공연)	20,000원		
		무빙라이트(1회공연)	5,000원		
		귀 빈 실(1일)	40,000원		
		난 방	실사용량		
		냉 방	실사용량		

기관명	사 용 구 분			징 수 액	비 고
충청북도 학생교육 문 화 원	수영장 (경영풀장)	일일입장	초등학생이하	1,500원	○ 사용료는 1인 기준임 ○ 초등학생이하 : 13세 미만 ○ 중·고등학생 : 13세 이상 19세 미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자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 강습료는 월 회비에 10,000원을 추가(스킨스쿠버 제외) ○ 단체는 15인 이상 적용 ○ 다이빙장은 지도강사 입회시 사용 가능 ○ 스킨스쿠버용 압축공기통 사용시 1개당 7,000원 추가
			중·고등학생	2,000원	
			일반인	3,000원	
		월회원	초등학생이하	30,000원	
			중·고등학생	35,000원	
			일반인	50,000원	
		단체입장	초등학생이하	1,000원	
			중·고등학생	1,500원	
			일반인	2,500원	
	수영장 (다이빙장)	일일입장	스킨스쿠버	10,000원	
			초등학생이하	2,500원	
			중·고등학생	3,000원	
			일반인	4,000원	
		월회원	스킨스쿠버	170,000원	
			초등학생이하	50,000원	
			중·고등학생	55,000원	
			일반인	70,000원	
		단체입장	스킨스쿠버	7,000원	
			초등학생이하	2,000원	
			중·고등학생	2,500원	
			일반인	3,500원	
	수영장 (전용)	경영풀장(시간당)		200,000원	○ 공휴일 및 야간사용(동계 17:00이후, 하계 18:00이후)시 시간당 30퍼센트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다이빙장(시간당)		100,000원	
		개인사물함(월)		3,000원	○ 월회비 3월이상 선납자는 해당기간 면제
	복사료	A3-B4		40원	1매당
		A4-B5		30원	〃
	인쇄료 (디지털자료실)	흑백	A3-B4	80원	〃
			A4-B5	50원	〃
		칼라	A4-B5	500원	〃

[별표 3]

수련원 및 야영장 사용료 징수금액(제33조 관련)

(단위:원)

기관명	사용구분		징수액			비고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공공단체 및 기타	
충청북도 학생종합 수련원	숙박비	진천시설	무료	무료	3,000	○ 1인 1박 기준
		보령시설	1,000	20,000 (30,000)	30,000 (40,000)	○ 학생은 1인 1박 ○ 공무원 및 가족, 공공단체 및 기타는 1실1박 기준 ( )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시설사용료 (진천시설)		무료	무료	50,000	○ 1일기준(단체) ○ 100명 초과시 초과하는 50명당 30,000원씩 가산
	강당 사용료		무료	무료	50,000	○ 1일 기준
	강당 냉·난방비		무료	무료	실비	○ 유류사용량에 따라 사용 당시의 유류가격 적용 ○ 에어컨 사용시 전기 사용량에 따라 요금적용
	교재발간시 교재비		무료	무료	실비	
기타 야영장	시설사용료		무료	무료	50,000	○ 1일기준(단체) ○ 100명 초과시 초과하는 50명당 30,000원씩 가산

1. 본 표 중 학생, 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학생·교직원으로서, 학생은 학교장의 신청에 의거 수련원장(야영장장)이 허가한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 한함.
2. 법인으로 등록된 청소년단체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고등학교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활동은 1호에 준함.
3. 대학생과 1호 및 2호 이외의 학생은 기타에 준함.

[별표 5]

학생회관 사용료 징수금액(제26조 관련)

<table>
<tr><th>기관명</th><th colspan="3">사 용 구 분</th><th colspan="2">징 수 액
(기준 시간내)</th><th>비 고</th></tr>
<tr><td rowspan="28">충청북도
충 주
학생회관</td><td colspan="3" rowspan="3">공연장</td><td>오전</td><td>100,000원</td><td rowspan="28">○기준시간(4시간)을 초과 사용할 때는 매 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사용전 예비사용시간 포함. 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토요일, 공휴일에 사용할 때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단, 냉·난방은 제외)
○피아노 별도 조율시는 사용자 부담
○유선마이크 3개 기본 무료
○연습 및 무대장치 설치를 위한 준비 시 기준사용료의 50%징수(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모든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td></tr>
<tr><td>오후</td><td>120,000원</td></tr>
<tr><td>야간</td><td>150,000원</td></tr>
<tr><td colspan="3">전시실(1실당)</td><td colspan="2">20,000원</td></tr>
<tr><td rowspan="23">공연장
부속설비</td><td colspan="2">피아노(1회공연)</td><td colspan="2">40,000원</td></tr>
<tr><td colspan="2">프로젝터(1회공연)</td><td colspan="2">20,000원</td></tr>
<tr><td colspan="2">DVD녹화(1회공연)</td><td colspan="2">30,000원</td></tr>
<tr><td colspan="2">유선마이크(1개당)</td><td colspan="2">5,000원</td></tr>
<tr><td colspan="2">무선마이크(1개당)</td><td colspan="2">5,000원</td></tr>
<tr><td colspan="2">핀마이크(1개당)</td><td colspan="2">10,000원</td></tr>
<tr><td colspan="2">보면대(1개당)</td><td colspan="2">1,000원</td></tr>
<tr><td colspan="2">드라이아이스(1회공연)</td><td colspan="2">30,000원</td></tr>
<tr><td colspan="2">포그머신(1회공연)</td><td colspan="2">20,000원</td></tr>
<tr><td colspan="2">덧 마 루(1일)</td><td colspan="2">30,000원</td></tr>
<tr><td colspan="2">합 창 대(1일)</td><td colspan="2">30,000원</td></tr>
<tr><td colspan="2">무용매트(1일)</td><td colspan="2">70,000원</td></tr>
<tr><td colspan="2">음향반사판(1회공연)</td><td colspan="2">30,000원</td></tr>
<tr><td colspan="2">기본조명(1시간)</td><td colspan="2">30,000원</td></tr>
<tr><td colspan="2">롱핀(2Kw)(1회공연)</td><td colspan="2">20,000원</td></tr>
<tr><td colspan="2">무빙라이트(1회공연)</td><td colspan="2">5,000원</td></tr>
<tr><td colspan="2">귀 빈 실(1일)</td><td colspan="2">40,000원</td></tr>
<tr><td colspan="2">냉·난방</td><td colspan="2">1회당 50,000원</td></tr>
<tr><td colspan="2">조 명</td><td colspan="2">1시간당 30,000원</td></tr>
<tr><td rowspan="4">수영장</td><td rowspan="2">학생</td><td>개인</td><td colspan="2">500원</td><td rowspan="4">○ 사용료는 1인 기준임
○ 학생 : 19세미만 또는 고등학생 이하
○ 단체는 30인이상 적용</td></tr>
<tr><td>단체</td><td colspan="2">400원</td></tr>
<tr><td rowspan="2">일반</td><td>개인</td><td colspan="2">1,000원</td></tr>
<tr><td>단체</td><td colspan="2">800원</td></tr>
</table>

기관명	사 용 구 분			징 수 액	비 고
제 천 학생회관	롤 러 스케이트장	학생	개인	500원	○ 사용료는 1인 기준임 ○ 학생 : 19세미만 또는 고등학생 이하 ○ 단체는 30인 이상 적용
			단체	400원	
		일반	개인	1,000원	
			단체	800원	
	수영장	학생	개인	500원	
			단체	400원	
		일반	개인	1,000원	
			단체	800원	
공 통	복사료	A3-B4		40원	1매당
		A4-B5		30원	〃
	인쇄료 (디지털자료실)	흑백	A3-B4	80원	〃
			A4-B5	50원	〃
		칼라	A4-B5	500원	〃

[별지 제1호 서식]

공공도서관(학생교육문화원, ○○학생회관)시설 사용신청서

신 청 인 소 속	기관명		전화	
	주 소		FAX	
사용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사용인원				
사용대상				
특별설비				

귀 원(관)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시설을 사용코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도서관(학생교육문화원, ○○학생회관)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이하 “교육과학연구원”이라 한다),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이하 “교육연수원”이라 한다), 충청북도중앙도서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및 지역교육청 소속 학생회관(이하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이라 한다),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및 지역교육청 소속 학생야영장(이하 “수련원 및 야영장”이라 한다),_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이하 “외국어교육원”이라 한다), 지역교육청 소속 교직원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 충청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공동실습소”라 한다)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 ---------- ---------- ---------- ---------- ----,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 학생회관(이하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이라 한다), --- ---------- ---------- ---------- ---------- ---------- ---------- ---------- ----------.
제26조(사용료)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의 사용료 징수액은 별표 2와 같다.	제26조(사용료) ---------- ----------각각 별표 2 및 별표 5와 같다.
제27조(사용료의 감면) ② (생략) 1.~ 3.(생략)	제27조(사용료의 감면) ② (현행과 같음) 1.~ 3.(현행과 같음)

4.「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인 경우 돌봄이 1인	4. ---------- 보건복지부장관이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33조(사용료 징수) 수련원 및 야영장 사용료 징수액은 별표 3과 같다. <단서 신설>	제33조(사용료 징수) ----------. 다만, 식비는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사용료 징수금액 신구대비표(안 별표 2, 별표 5)

사 용 구 분(기준)		학생교육문화원					충주학생회관		
		현 행		개 정 안		비고	개 정 안		비고
공 연 장		오전	120,000원	오전	120,000원		오전	100,000원	신설
		오후	150,000원	오후	150,000원		오후	120,000원	신설
		야간	180,000원	야간	180,000원		야간	150,000원	신설
영화음악감상실		오전	30,000원	오전	30,000원				
		오후	40,000원	오후	40,000원				
		야간	50,000원	야간	50,000원				
본관 공연장			50,000원			삭제			
강당			75,000원			삭제			
전시실 내부(1일)			20,000원		20,000원			20,000원	신설
전시실 외부(1일)			10,000원		10,000원				
부속설비	피아노(1회공연)		40,000원		40,000원			40,000원	신설
	피아노(영화음악 감상실)		10,000원			삭제			
	피아노(본관 공연장)		10,000원			삭제			
	프로젝터(1회공연)		20,000원		20,000원			20,000원	신설
	CD녹음(1회)		30,000원			삭제			
	테이프녹음(1회)		10,000원			삭제			
	DVD녹화(1회공연)				30,000원	신설		30,000원	신설
	유선마이크(1개당)		5,000원		5,000원			5,000원	신설
	무선마이크(1개당)				5,000원	신설		5,000원	신설
	핀마이크(1개당)		10,000원		10,000원			10,000원	신설
	보면대(1개당)		1,000원		1,000원			1,000원	신설
	드라이아이스(1회공연)				30,000원	신설		30,000원	신설
	포그머신(1회공연)				20,000원	신설		20,000원	신설
	덧 마 루(1일)				30,000원	신설		30,000원	신설
	합 창 대(1일)				30,000원	신설		30,000원	신설
	무용매트(1일)				70,000원	신설		70,000원	신설
	음향반사판(1회공연)				30,000원	신설		30,000원	신설
	기본조명(1시간)				30,000원	신설		30,000원	신설
	롱핀(2Kw)(1회공연)				20,000원	신설		20,000원	신설
	무빙라이트(1회공연)				5,000원	신설		5,000원	신설
	귀 빈 실(1일)				40,000원	신설		40,000원	신설
	난 방		실사용량		실사용량			50,000원(1회)	신설
	냉 방		실사용량		실사용량			30,000원(1시간)	신설
	냉 방(본관)		전기수용기본요금×1/30+실사용량			삭제			
	조 명(전기)		전기수용기본요금×1/30+실사용량			삭제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법률 제10272호, 2010. 4.15, 타법개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